

서울고등법원 2016. 5. 20 선고 2015나2066715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서울신용보증재단

피고, 피항소인 1. A 주식회사

2. B

피고, 항소인 3. D

변론 종결 2016. 4. 22.

판결 선고 2016. 5. 20.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8. 선고 2015가합502744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7,280원을 지급하라.
2. 피고 D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D이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4,358,098원 및 위 돈 중331,329,028원에 대한 2014. 12.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1)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D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8. 20. 접수 제278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주문 제1항과 같다.

나. 피고 D : 제1심 판결 중 피고 D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공동피고 C, E에 관한 부분을 모두 삭제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마지막 행의 "지출하였다"를 "지출하였고,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연체보증료 17,250원 및 추가보증료 230,030원이 발생하였다"로 고치고, 제5쪽 제9행의

"9호증"을 "9, 15호증"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4, 15행의 "때문이라는 것이다"를 "때문이라는 것인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 D은 자신이 현재 사는 아파트의 경우도 그 동생인 P이 위 아파트에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승계 없이 매수한 사실이 있어, F 아파트의 경우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굳이 승계받지 아니하고, 그 이자만을 제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위 아파트의 매수 경위에 관한 주장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그 주장 자체로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위 주장대로라면 위 F 아파트를 피고 D에게 매도한 피고 B은 매수인인 피고 D이 승계하기로 되어 있는 1,7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그대로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정상적인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7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B과 피고 D 사이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마.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6 내지 19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334,358,098원(= 대위변제금 331,329,028원 + 법적절차비용 2,781,790원 + 연체보증료 17,250원 + 추가보증료 230,030원) 및 위 돈 중 대위변제금 331,329,02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12.23.부터 피고 A 주식회사, B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0. 28.까지는 약정에서 정한 연 1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피고들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구상금 247,280원(= 연체보증료 17,250원 + 추가보증료 230,030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또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D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D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인겸, 판사 하상혁, 판사 신종오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강릉시 K에 있는
F아파트 제204동
[도로명주소] 강릉시 M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204-15-1503
구 조 :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면 적 : 제15층 제1503호 49.85㎡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표시 : 강릉시 K 대 18337.4㎡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8337.4분의 40.3042

끝.